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02
----------	------

2026년 3월 1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아이수루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6년 3월 10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이수루 의원)

1. 제안이유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명확한 국제교류협력 대상의 선정 및 검토, 사후관리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제교류협력의 정의를 확대함 (안 제2조)
-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6조)
- 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을 규정함 (안 제6조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아이수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02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정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교육감 역할 강화, 사업 대상 검토 및 선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1) 정의(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2호는 ‘국제교류협력’의 정의 중 그 범위를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표-1] ‘국제교류협력’ 정의 개정 전후 비교

현행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2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

현행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2호
및 업무협약 체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의 활동	연 및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의 활동

- 현행 ‘국제교류협력’의 정의가 자매결연, 업무협약, 국제행사 등과 같이 비교적 관계·형식 중심의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개정안은 여기에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교육 내용 중심의 협력으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현행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¹⁾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까지 확장하는 것은 정의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제교류협력 사업(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교육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제2항), 예산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관리·지원하는 것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안 제2항과 제3항의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교육 및 홍보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사업
5. 선진기술의 습득 또는 전수,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6.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러나 현행 조례 제4조는 교육감에게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교류협력은 그 계획 및 사업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3항의 규정은 중복 규정으로서 입법구조상 비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 따라서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더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안 제6조2)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의2는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그 기준을 각 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류협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특성·재정 상태·정책 우선순위가 상이하므로,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및 「지방자치법」 제10장(국제교류·협력)은 포괄적인 근거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안 제6조의2 각 호는 상호협력 가능성(제1호, 제2호, 제4호), 교류기반 여건(제3호, 제5호), 교류의 실익 및 효과(제6호)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지자체 조례의 기준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설정은 임의적 결정을 방지해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높여 시민·지역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표-2] 타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기준(일부 발췌)

자치단체명	조례명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 에 관한 조례	1.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시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경기도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에 관한 조례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성 2.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3. 교육, 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6.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7. 그 밖에 외교적 특수성 등

○ 따라서 안 제6조의2와 같이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공공성·합리성·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안 제6조를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02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은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중복 규정으로서 입법구조상 비효율적이라 판단됨.
- 따라서 안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0;"><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0;"><u><신 설></u></p>	<p>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교육감은 제1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p> <p>③ <u>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0;"><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10px 0;"><u><삭 제></u></p>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체결”을 “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 교육감은 제6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체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의 활동을 말한다.</p> <p>3.·4.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 사업</u>-----.</p> <p>3.·4.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2(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 교육감은 제6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u></p> <p><u>1. 상호 신뢰성</u></p> <p><u>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u></p> <p><u>3.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u></p> <p><u>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u></p> <p><u>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u></p> <p><u>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u></p>